

재활용 관련 산업정책



 산업자원부

재활용 산업 현황

국내 재활용 산업 현황

산업폐기물 대폭증가

산업활동 활성화로 매년 13%씩 증가

구 분	98 년	99 년	00 년	01 년
계	44,558	219,217 (18.5%)	226,668 (3.4%)	252,927 (11.6%)
생활 폐기물	44,583	45,614 (2.3%)	46,438 (1.8%)	48,499 (4.4%)
사업장폐기물	140,406	166,114 (18.3%)	180,230 (8.4%)	204,428 (13.4%)

자원재생공사 2002년 자료 톤/년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국내 재활용 산업 현황

폐자원 재활용 미흡

- 재활용 업체 낙후 등으로 재활용 미흡
- 폐자원의 해외의존

구 분	제품생산량	총폐자원 사 용 량	국내 폐자재 사 용 량	수입 폐자재 사 용 량	국내 폐자재 재 활용률
고철 및 폐철캔	43,607,700	17,607,700	9,726,700	8,059,100	22%
폐 지	10,659,977	7,597,495	5,999,485	1,598,010	56%
폐 유 리	785,138	589,922	589,922	-	75%

자원재생공사 2002년 자료 톤/년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국내 재활용 산업 현황

재활용업체 영세성

- 재활용업체수 증가 (98'1,568 → 01' 2,447)
-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

재활용산업의 지속적증가

-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(98' 1조4천억 → 01'1조9천)
- 02' GR 인증업체 매출액 1 조 4천억 전년대비14%증가

재활용 제품의 판매량 및 판매가 증가

- 판매량 : 98'27,134 천톤 → 01' 56,811천톤
- 판매가 : 98' 51,117원/톤 → 01' 68,811원/톤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추진 현황

그간의 추진 현황

• 국내 생산제품의 재활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기획 연구

- ✓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(국가청정생산센터)
- ✓ 전문가 및 설비 업체에 대한 의견 수렴 활동 등을 추진 중
- ✓ 환경부와 차별된 산자부의 재활용산업육성 방안 모색

• 재활용제품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실시

- ✓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품질 수준 제고를 위한 "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(GR : Good Recycled)" 실시
- ✓ 대상품목 : 250개, 인증건수 : 205건, CR규격 209종 (2003년 12월 현재)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그간의 추진 현황

• 재활용시설 투자유도를 위한 설비 및 운전자금 지원

- ✓ 자원재활용 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, 공장설치비 등 지원
- ✓ 2003년 54억원 지원
- ✓ 이자율차이 등으로 환경부의 재활용육성자금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.

• "재활용산업 정보망" 구축사업 추진 ('98' ~ '03)

- ✓ 국내 재활용 분야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(12,000여건)
- ✓ 자원재활용관련 특허, 논문, 세미나, 실용화 기술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(11,894건)
- ✓ 청정생산기술 관련업체 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(50여건)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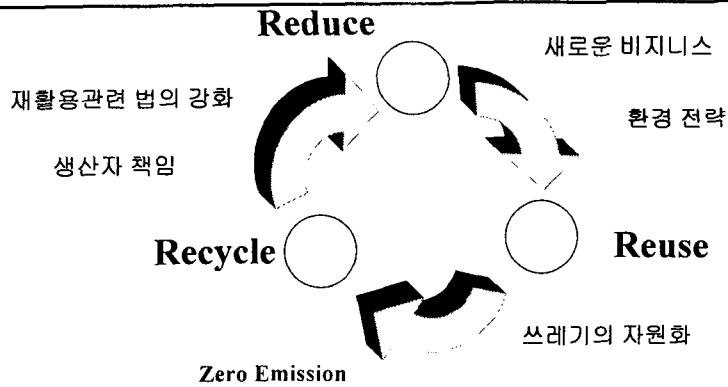
재활용 관련 산업정책

- 정책 목표
- 세부 추진 과제

정책 목표

자원 순환형
경제·사회체계 구축

자원순환의 의미를 확대 도입하여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
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재활용 촉진방안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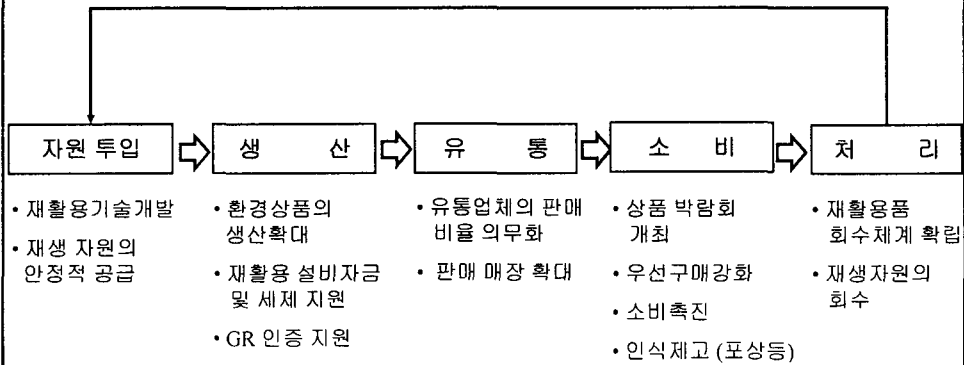
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정책 목표

자원의 순환

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세부 추진 과제

2004년도 주요 업무 (산자부)

- **재활용 산업 육성방안 수립 및 추진 (7월)**
- **재제조 산업 (Remanufacturing Industry) 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육성방안 수립**
 - 전세계적으로 사업장8만개, 종사자50만명, 시장규모530억불
- **영세한 재활용 업체의 자생기반 구축**
 -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
 - 재활용 제품의 생산, 수거에 대한 세제감면 추진
- **재활용 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재활용설비의 수요기반 확충**
 -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(GR: Good Recycled)확대
 - 재활용설비 설치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(04' : 250억원)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세부추진과제

재활용산업 인프라 구축

·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지원 (산자부)

- 재활용 업체의 집적을 통한 폐자원의 유기적 활용 및 처리 도모
-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재활용 클러스터 형성
- 재활용 기업의 입지 요건 완화 (개발제한구역내 입주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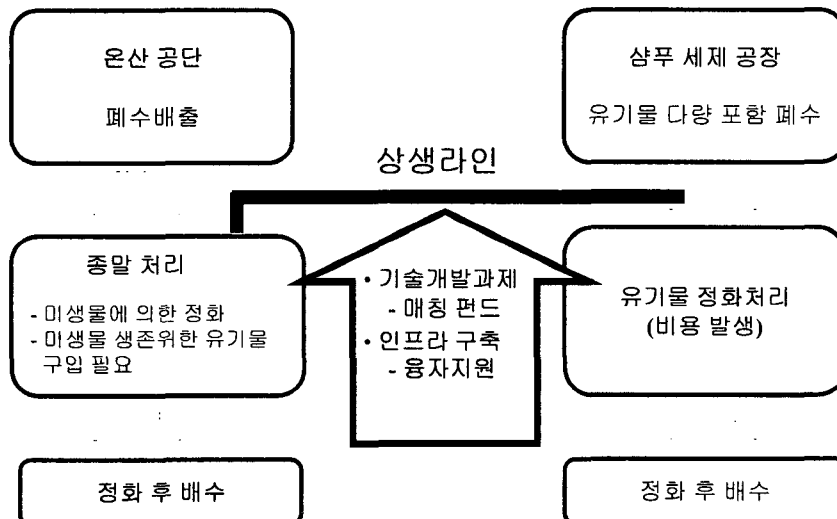
· 생태산업단지 (EIP) 조성 (산자부)

-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, 부산물, 폐열 등을 재활용하여 원료로 재사용 하는 기업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
- 시범단지 공모 및 선정(04 상반기) , 지원 (청정기술개발자금)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· 생태산업단지(기업간 네트워킹 기술개발 사례)



세 부 추 진 과 제

자원 투입 단계 지원

- **재활용 기술개발 지원(산자부, 환경부, 과기부)**
 - 청정생산기술개발자금(400억) 중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 (산자부)
 -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(Eco-technopia 21) :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기술(환경부)
 -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: 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(과기부/환경부)
- **재생 자원의 안정적 공급(환경부)**
 - 재생원료 수급 조절 지원 : 경기변동을 감안한 재생원료 수요량 및 고급량을 예측 대응하여 적기에 공급할수 있는 시스템 마련
 - 재활용품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세 부 추 진 과 제

생산 단계 지원

- **환경 친화적 제품의 생산확대 (환경부)**
 - 친환경적인 청정제품 및 제품설계기술 개발 지원
- **재활용설비 설치자금 및 세제지원 (산자부 / 환경부)**
 - 산업기반자금 중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자금(산자부) 융자 : 250억원/5.5%
 - 재활용산업육성자금 (환경부): 재활용시설설치 및 기술개발 융자 : 600억원/4.63%
 -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과 재활용시설관련 관세 감면 대상 확대
- **GR 인증제도 시행 (산자부)**
 - GR 인증 품목, 규격, 건수의 지속적 확대 / GR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
 - GR 인증 업체에 대한 지원확대 :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,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세 부 추 진 과 제

유통 단계 지원

- 유통업체의 재생상품 판매 의무 비율 지정 (환경부)
 - 판매업자 스스로 재생상품의 판매를 늘리도록 유도
 -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 상품 판매를 부과
 - 상품 구입액의 일정비율 재생상품 구입 의무화
- 재활용제품 판매매장 확대 (환경부)
 -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센터를 재활용 제품 유통 및 판매센터로 활용화
 - 권역별 공공 재활용제품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제품의 유통, 판매 촉진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세 부 추 진 과 제

소비 및 수요 단계 지원

- 재활용 및 환경친화제품의 구매 활성화 지원 (산자부)
 - 국제환경친화상품 박람회개최 (04'11) :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지원
-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(환경부)
 -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기관 확대/대상품목확대/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분석 평가
- 재활용 제품 소비 촉진 (환경부)
 - 재활용제품생산업체와 다량 수요처 간의 연간 공급계획체결 유도
 - 폐기물배출업체와 재활용제품생산업체간의 교환사용 유도,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세 부 추 진 과 제

소비 및 수요 단계 지원

• 재활용산업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실시 (산자부)

- 재활용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진 (04;06월경)
: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시 재활용 부분 시상 및 재활용 산업 유공자 표창
- 재활용업체 및 종사자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, 확산을 통한 재활용 확산 분위기 조성

•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(환경부)

- 의무구매 재활용제품의 가격, 생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 적정 재활용 제품 구매 유도
- 재활용제품 홍보전시관을 전국적으로 확대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

세 부 추 진 과 제

소비 및 수요 단계 지원

•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 (환경부)

- 친환경상품의 보급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구축에 기여
- 친환경상품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필요
- 친환경상품과 재활용제품(GR마크)와의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
: 친환경상품의 등급이 필요-재활용상품이 최고등급의 환경상품이 되어야 함.

산업자원부

산업환경과